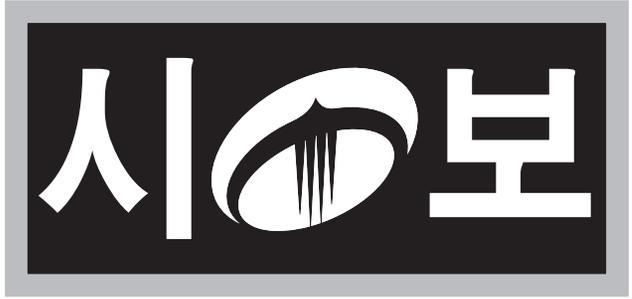


포 향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25호 2009. 4. 21(화)

| |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|

포 향 시

- 시장지시사항 2
- ◀ 훈 령 ▶
- 포항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(제212호) 6
- ◀ 입법예고 ▶
-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제2009 - 553호) 8
- ◀ 공 고 ▶
-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(제2009 - 540호) 12
-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공고(제2009-550호) 16

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| |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 | | |

| 관리 번호 | 지 시 내 용 | 주관부서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<p>훈 시 (4. 20)</p> | <p>○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찾아 격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음. - 서민들의 생활현장을 간부들이 직접찾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여 챙기기 바람. <p>○ 산불감시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자연부락단위 책임을 맡겨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불감시를 자연부락단위로 기동성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책임을 맡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여 - 마지막까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. <p>○ 공직기강확립 철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중앙부처에서 대규모 감사관을 동원, 암행감찰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골프장, 유흥업소 출입자제 등 공직 기강확립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<p>○ 시장에게 구두, 전화 우선보고 활성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종 지시에 따른 보고를 문서로써 구체적으로 하려다 보니 시기적으로 늦고 비효율적인 보고가 되고 있음. - 1차 구두 또는 전화로 우선 보고하여 조율하고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 후 구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. | <p>전 부 서</p> <p>전 부 서 (도시녹지과) (남, 북구청)</p> <p>전 부 서 (감사담당관실)</p> <p>전 부 서</p> |

| 관리 번호 | 지 시 내 용 | 주관부서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훈 시 (4. 20) | <p>○ 포항을 세계에 크게 알린 일본신문 기사 적극홍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항시의 일본 후쿠오카 연수를 크게 기사화한 일본 요미우리신문 (“한국 포항시 선지지에 공부하러 전직원 2000명 후쿠오카에 연수 “란 제목의 5단기사) - 구룡포 일본인 가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크게 기사화 한 일본 아사히 신문 (“일본 속에 살아있는 포항” 이란 제목의 1면 톱기사) -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효과를 본 것으로 우리시가 집중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룬 포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한 성과임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. | 전 부 서 (공보담당관실) |

훈 령

포항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년 4월 21일

포항시 훈령 제 212 호

포항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포항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

- 1. 공통점수 : “전 직원에게 65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” 을
⇒ “전 직원에게 예산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”
- 2. 근속점수 : “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” 을
⇒ “근속 1년당 10점씩, 최고 300점까지 배정”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1조(복지점수의 배정) ① 개인별 복지 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.</p> <p>1. 공통점수 : 전 직원에게 <u>650점</u>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.</p> <p>2. 근속점수 :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<u>250점</u>까지 배정한다.</p> | <p>제11조(복지점수의 배정) ① ----- -----.</p> <p>1. 공통점수 : ----- <u>예산규모에 따라</u> -----.</p> <p>2. 근속점수 : ----- <u>300점</u>-----.</p> |

입법예고

「포항시 시세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년 4월 20일

포항시 공고 제2009 - 553호

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지방세법의 개정('09.2.6)에 따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(주택 60%, 토지 및 건축물 70%)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, '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

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1.5에서 1,000분의 1.4로 인하함
(안 제91조)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237조(도시계획세의 세율)
- 도시계획세율 인하관련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(2009. 4. 14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(참조: 세정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, 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포항시 재정관리과(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)
- 전화 054-270-2486, 팩스 054-270-2490, 이메일 tax0915@korea.kr

5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@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 중 “1,000분의 1.5” 를 “1,000분의 1.4” 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기한)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91조(세율)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<u>1,000분의 1.5</u>로 한다.</p> | <p>제91조(세율)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<u>1,000분의 1.4</u>로 한다.</p> |

관 련 법 령(발 취)

□ 지방세법

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.

제237조(세율)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,000분의 1.5로로 한다.

② 시장·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,000분의 2.3을 초과할 수 없다.

공 고

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. 4. 21

포항시 공고 제2009 - 540호

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

1. 건 명 : 202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
2. 열람 일시 및 장소
 - 일 시 : 2009. 4. 21 ~ 2009. 6. 2(열람기간 : 30일이상)

- 장 소 :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(☎ 270-3462~4)

3.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

- 계획구역 : 1,233.55km²
- 목표년도 : 2020년
- 계획인구 : 850,000명

- 토지이용계획

① 총 괄

| 구 분 | | 면 적(km ²) | | | 구성비(%) | 비 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 |
| 계 획 구 역 | | 1,233.55 | - | 1,233.550 | 100.0 | |
| 시가화용지 | 소 계 | 103.46 | 감 35.677 | 67.783 | 5.5 | |
| | 주거용지 | 51.30 | 감 15.870 | 35.430 | 2.9 | |
| | 상업용지 | 8.29 | 감 3.430 | 4.860 | 0.4 | |
| | 공업용지 | 43.87 | 감 18.260 | 25.610 | 2.1 | |
| | 관리용지 | - | 증 1.883 | 1.883 | 0.2 | |
| 시가화예정용 지 | 소 계 | - | 증 97.789 | 97.798 | 7.9 | |
| | 주거기능 | - | 증 28.417 | 28.417 | 2.3 | |
| | 상업기능 | - | 증 4.416 | 4.416 | 0.3 | |
| | 공업기능 | - | 증 48.296 | 48.296 | 3.9 | |
| | 제2종 지구단위계획 | - | 증 16.660 | 16.660 | 1.4 | |
| 보 전 용 지 | | 1,022.56 | 감 60.422 | 962.138 | 78.0 | |
| 미지정(해면) | | 107.53 | 감 1.690 | 105.840 | 8.6 | |

② 생활권별

| 지 역 생활권 | 근 린 생활권 | 면 적 (km ²) | 2003년 인구(인) | 2020년 인구(인) | 용도별 토지수요량(km ²) | | | 시가화예정용지(km ²)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| | | 주 거 | 상 업 | 공 업 | 주 거 | 상 업 | 공 업 |
| 합 계 | | 1,127.71 | 510,414 | 850,000 | 63.847 | 9.276 | 73.906 | 28.417 | 4.416 | 48.296 |
| 중심 생활권 | 연일, 흥해, 동지역 | 184.22 | 379,938 | 550,000 | 41.313 | 6.302 | 21.185 | 17.151 | 3.078 | 19.950 |
| 북부 생활권 | 신광, 청하, 송라, 기계, 죽장, 기북 | 630.89 | 29,731 | 100,000 | 4.511 | 0.591 | 8.345 | 0.986 | 0.057 | 8.308 |
| 남부 생활권 | 구룡포, 오천, 대송, 동해, 장기, 대보 | 312.60 | 107,745 | 200,000 | 18.023 | 2.383 | 44.377 | 9.910 | 1.281 | 20.039 |

③ 공원 및 유원지 변경내역

가. 공원총괄

| 구 분 | 당 초 | | | 변 경 | | 변 경 후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개 소 | 면 적(km ²) | 1인당공원 면적(m ² /인) | 개 소 | 면 적(km ²) | 개 소 | 면 적(km ²) | 1인당공원 면적(m ² /인) |
| 계 | 51 | 11.452 | 22.44 | 증 1 | 증 1.320 | 52 | 12.772 | 15.03 |
| 도시자연공원 | 8 | 6.374 | - | 감 8 | 감 6.374 | - | - | - |
| 근 린 공 원 | 40 | 4.045 | - | 증 9 | 증 7.694 | 49 | 11.739 | |
| 묘 지 공 원 | 1 | 0.989 | - | - | - | 1 | 0.989 | |
| 체 육 공 원 | 2 | 0.044 | - | - | - | 2 | 0.044 | |

가.-1 공원(변경분)

| 구 분 | 공 원 명 | 위 치 | 면 적(km ²) | | | 비 고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
| 계 | | | 11.452 | 증 1.320 | 12.772 | |
| 근린공원 | 사방기념공원 | 홍해 오도리 | - | 증 1.320 | 1.320 | |

나. 유원지 총괄

| 유원지명 | 위 치 | 면 적(km ²) | |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
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
| 계 | - | 2.077 | 증 1.495 | 3.572 | |
| 칠포유원지 | 홍해읍 칠포리 | 1.474 | 감 0.174 | 1.300 | 축 소 |
| 하옥유원지 | 죽장면 하옥리 | - | 증 1.900 | 1.900 | 신 설 |
| 화진유원지 | 송라면 화진리 | - | 증 0.172 | 0.172 | 신 설 |
| 동해유원지 | 동해면 임곡리 | - | 증 0.100 | 0.100 | 신 설 |
| 해도수변유원지 | 죽도동·해도동 | - | 증 0.100 | 0.100 | 신 설 |
| 북부유원지 | 항구동 | 0.036 | 감 0.036 | - | 폐 지 |
| 송도유원지 | 송도동 | 0.455 | 감 0.455 | - | 폐 지 |
| 구룡포유원지 | 구룡포읍 구룡포리 | 0.112 | 감 0.112 | - | 폐 지 |

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(☎270-3462~4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(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)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(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. 04. 16.

포항시 공고 제2009-550호

확인검사대행자 등록 공고

- 1. 공고기간 : 2009. 4. 17 ~ 2009. 4. 30(14일)
- 2. 공고내용 :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내역 공고

| 등록번호 | 업소명 | 대표자 | 소재지 | 검사항목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포항제2호 | 르노삼성 자동차 포항정비 사업소(주) | 김진태 (671217 - 1*****) |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66-6번지 | - CO, HC, 공기흡입율 - 매연 | '09.4.16 등록 |

- 3. 상기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
포항시 환경위생과(☎054- 270-309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